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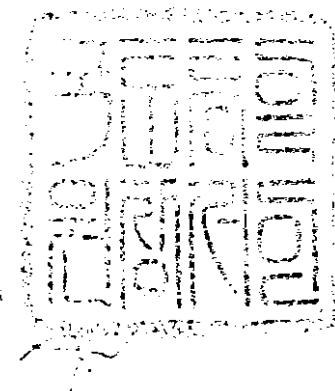
北韓의 統一政策 分析 및 對備策 講究

1974. 9.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 다

1974. 9.



연구책임자 : 이 용 국

• 北韓의 統韓政策分析 및 對備策講究 •

(1)

대한민국 수립 이후 금일에 이르기 까지 한국정부가 연연히 견지해온 統韓方案의 원형은 1947년 8월 26일자 Lovett 美國務次官補의 Molotov 소련外相에 대한 각서에서 밝혀진 것인데 그것은 UN監視下에 南北韓總選舉로서 人口比例에 의한 統韓政府를 수립하자는 것 이었다.

로벳트案의 前記骨字는 그해 10월 17일 미국이 UN總會에 提出한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決議案에 반영되어 大韓民國樹立의 과정을 거친 후 통한의 基本方案으로서 持続되었으며, 54년 제네바會議에 卞榮泰外務部長官이 약간의 註記을 加한¹⁾ 外에는 큰 變化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원래 로벳트안이 나온 裏面에는 한국측과 미국정부의 치밀한 打算과豫測이 있었을 것이다. 즉 당시의 여건 하에서 UN監視下의 자유선거를 施行하면 蘇聯軍政下의 北韓共產体制는 틀림없이 互解될 것이고, 남북한人口比例의 代表制는 자유민주적 통한정부의樹立을 保障할 수 있으리라고 確信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案을 蘇聯側이 受諾하였더라면 南韓에서 美國의 그

註1) 卞榮泰等 外交全錄, 단기 4292年刊 第五章 參照

리하였듯이 북한에서는 蘇聯軍政의 權能下에 선거가 시행됐을 것 이고 加之 UN의 감사는 공산체제의 와해를 보장하고 必須的이고 充分한 조건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컨데 당시의 미국제의는 選舉施行의 權能과 선거감시의 권능을 区分한 二元的性格을 내포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감시機構인 UN臨時韓國委員團의 設置를 규정한 결의문(1947년 11월 14일)과 그후 UN韓國委員團의 設置를 규정한 결의문(1948년 12월 12일)을 보면 그 權能이 「監視」(Observation), 「協議」(Consultation), 「調停」(Good offices) 등으로 限定되었음을 알 수 있다.

大韓民國이樹立되고 以北에서 共產政權이 蘇聯軍政을 繼承한 (1948년 9월 7일) 이후로 문제는 복잡해진다. 以北에서의 선거감시의 권능은 UN韓國委員團에 계승되었으나, 共產側이 한국의 통한 양관을 수탁할 경우 선거시행의 권능은 蘇聯軍政의 종결로 因하여論理上 北傀政權에 귀속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후 韓國動亂을 거쳐서 제네바政治會談이 개최되었을 때 당시 南外무부장관은 종래의 통한방안에 약간의 주석을 가하여 (제2항 현재까지 자유선거가 불가능했던 北韓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고, 南韓에서는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依拠하여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제11항 現行 대한민국 憲法은 全韓國立法부가 개정할때 까지는 保持効力を 보유한다. 등등) 全文 14個조항의 제한을 한바 있으나 제1항에서 『통일독립된 민주주의 한국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UN의 종전의 결의에 依拠한 UN감시 하의 자유선거를 実施

한다』고 蘭明하였는데 『UN의 종전의 결의에 의거한 UN감시하의 자유선거』란 『UN한국위원회』이· 이때까지 행사한 機能을 담당하며 『통일독립된 全韓民主主義 정부의 수립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UN을 대표』하고 『UN한국통일부총위원회』(UNCURK, 1950년 10월 17일자 UN총회결의에 의거함)의 감시하의 선거를 의미한 것이며, 따라서 선거감시와 선거시행의 二元的權能의 문제는 그대로放置되었던 것이다.

제네바회談이 개최된 당시(1954년) 난 해도 共產側이 한국의 통한방안을 수락했을 가능성은 1947년의 경우와 같이殆無하였을 것이고, 만약 그 케이스를 수락하여 선거시행의 권능을 공산정권이 행사한다 치더라도 UN감시하의 선거만 실시되면 北韓共產体制의 외해는 틀림없으리라고 想定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이상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变動이 심해지고, 통한문제가 尋戰的課題로서 제기되고 있는 차제에 장차 공산축이 한국의 통한방안을 수락하는 경우를 假定할 때 全韓議會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議席을 차지할 代議員의 선거가 不法集団인 北傀政權에 의하여 시행되리라는 것은 「UN감시」를 전제로 한다 치더라도 여러모로 곤란한 문제 껴리를 제기한다.

한국동란이래로 北韓의 공산체제는 集中化의 추세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 12월 別午里에서 열린 노동당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대회에서 무정, 김일등이, 51년 11월 동4차회의에서 하가 이등이, 53년 8월 동제6차회의에서 박현영이하 남노당계열의 핵심

세력이 숙청된 것은 6·25 남침의 실패와 패전의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術策이 였다.

일찌기 김일성은

火曜派, M·L파, 장안파, 대회파, 서울파, 서상파」 등 남조선 노동당을 규탄하여 「남조선 공산운동」의 실패책임을 그들의 「종파주의와 미군정, 이승만파의 野合」에 전가하였다. 그들이 「사회주의 세력의 분열을 초래하였고, 노동당의 創建(즉 合党) 제의에도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위 5倍加, 10倍加 운동으로 당의 이질성과 異質分子를 증대시키고, 무의미한 혁동선동으로 당의 조직을 노출시켰다.」²⁾ 는 것이다.

56년 8월 중앙위원회에서 최창익, 윤공흠, 박창우 등 집단지도 체제를 추구하던 延安派, 篤聯派 등이 숙청되고 58년 1월 제1차 대표자 회의에서 여타의 소위 종파주의자들이 숙청되는 등 不斷한 숙성파 한편으로 新進登用, 世代交替 등 교묘한 방법으로 金日成中心의 直系派가 權力を 独占한채 공산당의 기구와支配体制는 強化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면에서는 53~55년 기간의 戰後복구 3개년 계획, 56~60년 간의 5개년 계획, 61~67년 간의 7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동안에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다고 하는데, 3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전후복구에 주력 하였다고 하고, 5개년 기간 중에는 「사회주의적 공업

註2) 「조선노동당 제3회 대회 주요문집집, 중앙위사업총계보고(56년 4월 23일)」

화의 기초를 세우고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달성」하는데 치중한 것 같고, 7개년 계획은 67년에 10년 계획으로 연장되어 중공업 위주의 군사체제 확립에 주력한 것 같다.

그리하여 57 ~ 60년간 공업총생산은 3.5배로 늘고, 공업생산의 연증가율이 36.6%에 달하여 60년도에는 44년에 비하여 7.6배의 생산을 기록하였다고 한다.³⁾

휴전후에 강행된 농업의 집단화, 협동조합화는 대체로 58년에 완료됨으로서 농업경제의 사회주의화가 一段落되었다고 하며, 「貧農과 농촌의 당핵심분자들을 전위세력으로 하여 그 정책을 강행하여 그에 반발하는 富農에게는 철저한 재재를 가하고 中農계층은 설득으로 집산화에 참여케 하였다」고 하다. 그것은 40 ~ 100戸 단위의 농가를 ⁴⁾里別로 통합하고, 里人民委員長이 협동조합의 관리원장을 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기간에 手工業도 집산화가 강행되었고 기업가, 상인 등 戰爭中에 이미 몰락한 계급은 국영기업체의 노동자, 사무원등으로 흡수되어, 철저한 「意識改造」이 상호되었다.⁵⁾

北韓의 社會構造는 공산당을 정상으로 노동자, 사무원, 농업협동조합원등이 독특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김일성이 말한 「사회주

註3) 「조선노동당 제4회대회에 대한 중앙위의 활동보고」, 김일성
1961년 9월 11일

註4) 동상

註5) 동상

의 체제의 확립」이란 기업가, 상인, 개인업, 자유인 등 사회구조의多元的要素가 발달된 상태를 의미하며, 금일의 북한사회는 한국의 사회구조와는 너무나 諸異하고 대조적이다.

사회구조의 상부계층을 형성하고 党員의 수가 1965년에는 160万万名에 달하였다고 하는데⁶⁾ 61년 8월 현재의 당원수 1,311,563명(그중 후보당원 145,204명)에 비하여 근 30万名이 늘어났고, 56년 제3차 당대회 당시에 비하면 약 45만명이 증가된 셈이다. 노동자 출신의 당간부가 56년의 24%에서 61년에는 31%로 늘어난 것은 당원의 출신成分을 중요시 한 결과일 것이다.

외부세상에서 격리폐쇄된 환경과 일체의 이질적 요소의 介在를 부정하는 사회체제속에서 평균 成人남녀 2~3명중 1명꼴의 당원 -즉 공산주의의 前衛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북한은 한국과는 너무나 鄙離된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하에서 자유민주주의적 要素는 거개가 제거당하고 말았을 것이고 懶少部分이 故在, 潛伏상태하에서 겨우 命脈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歲月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 현저해질 것이다.

북한에서 공산정권이 기존의 정치체제, 사회구조, 경제관계와 더불어 지속된다면 가사 UN감시하의 선거가 實施된다. 차더라도 그

註6) 조선노동당 창전 제20주년에 제하여 경축대회에서 한 김일성 보고, 1965년 10월 11일

• ॥ १० ॥ विष्णु योग विजय कामदेव ॥

제작자: 박정수, 배우: 김민경, 출연: 김민경, 감독: 김민경, 촬영: 김민경, 편집: 김민경, 음악: 김민경, 조명: 김민경, 특수: 김민경, 의상: 김민경, 소리: 김민경, 제작: 김민경, 배우: 김민경, 출연: 김민경, 감독: 김민경, 촬영: 김민경, 편집: 김민경, 음악: 김민경, 조명: 김민경, 특수: 김민경, 의상: 김민경, 소리: 김민경, 제작: 김민경

(2)

1954년 제네바 회의 이후로 北匪는 통한 戰線에서 출가차게南北協商論을 들고 나왔다. 8·15 10주년 기념일에 김일성이 「남북조선 양수권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武力行使를 하시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정부간 회담」을 제의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문제가 이미 성숙되었다」고 말한것을 為始로 소련에서 平和共存論이 나온 후로 그는 「전생의 죽명적 불가피성은 없다」 「이승만의 北進統一의 口號가 戰爭不可避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남북간 관계완화와 接触協商의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남북간常設委員會의 설치」를 제의하였으며 「한국정세는 사회주의陣營에 有利한 方向으로 흐르고 있다」 「소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서 제기된 현시기에 있어서의 전생防止가공성에 관한 문제는 거대한 矢義的意義를 갖고 있다」⁷⁾ 고 풀이한 바 있다.

즉 「우리당은 相異한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원칙을 建立하여 제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영토안전, 주권에 대한 互相존중, 不可侵, 내정에 대한 不干涉, 평화와 호혜의 5개원칙에 立脚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가들과 친선적 외교관계를 설정하며, 실무적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전쟁세력을 반대하는 제인민들의 공동전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

註7)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에 대한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서

이다」, 「국제주 대에서의 力量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새로운 세 계대전을 방지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공고화 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다. ····· 그러나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전쟁위협은 사라지지 않으며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소련의 진지한 노력과 모든 합리적 방안등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 소련은 조선인민의 해방자」라고 평화공손과 对蘇關係에 대한 基本견해를 피력하는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여 조국의 자유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평화적 전선을 수호할것」을 다짐하였다.⁸⁾

그것을 요약하면 50년대 후반기까지만해도 북미는 对蘇의존관계 및 스스로 내포하는 여러가지의 脆弱性으로 인하여 独自的路線을 추구할 수 없는 迫地에 있었기 때문에 一見 소련의 평화공손론에追從하는 듯한 대도를 취하면서 안으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세우고 농업의 사회주의적 집단화를 달성」하는등 經濟的, 社会的 체강화에 힘을 기울였던 것 같다.

그러한 입장은 60년대에 들어서 부터 차츰 달라지기 시작한다. 즉 61년 9월 11일 「조선노동당 제4회대회에 대한 중앙위의 활동 보고」에서는 「모든 유리한 조건과 가능성을 어떻게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느냐의 것만이 남아있다. 당앞에 제기되는 임무는 우리나라 노동체급과 농민간의 동맹을 강화하여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강화하여,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을 공화국정부주위에 튼튼

註 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에 대한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의 결정서

註 6) 本條款係指當事人依本條款之規定，於合規申請後三十日內，未提出異議者，即為合規申請。註 7) 本條款係指當事人依本條款之規定，於合規申請後三十日內，未提出異議者，即為合規申請。註 8) 本條款係指當事人依本條款之規定，於合規申請後三十日內，未提出異議者，即為合規申請。註 9) 本條款係指當事人依本條款之規定，於合規申請後三十日內，未提出異議者，即為合規申請。註 10) 本條款係指當事人依本條款之規定，於合規申請後三十日內，未提出異議者，即為合規申請。註 11) 本條款係指當事人依本條款之規定，於合規申請後三十日內，未提出異議者，即為合規申請。

62회 12월 01일 제작국: 미국 원제: The 47th Annual Academy Awards 제작연도: 1995년

「哇，原來你就是李子雲啊！」李子雲說。王昭君說：「我就是昭君。」

5·16 | 周立波 | 「叮咚小哥」 | 電子商務 | 航空貨運 | 「亞馬遜」 | 「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할 테 대하여, 1962년 인민 경제생활총화와 1963년 인민경제발전 계획토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종전에 북괴가 指向하던 노선과는 判異한 것이고, 그로 부터 저들의 내외정책은 크게 전환된다.

60년대 전반기의 ¹²⁾ 북괴노선의 전환은 小見에 의하면 62년 10월의 Cuba사태에서 본 미·소관계의 급전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을 견제하고 카스트로정권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련이 큐바에 搬入한 미사일이 핵전쟁도 不辭한 케네디대통령의 단호한 조치에 대한 후루시초프의 후퇴로 인하여 좌수된 사태를 重大視한 것이 中共·北俄·큐바·알바니아등 혁명적·후진공산당이었으며, 중·소분쟁이 収拾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도 큐바사태가 큰 原因이었다고 생각된다.

中共은 당초에는 후루시초프의 큐바정책을 지지하다가 미사일 危機에서 후루시초프가 후퇴하면서부터 소련을 격렬히 비난하게 된다. 핵전쟁을 회피하는 소련과 소련을 저주하면서 카스트로의 혁명 노선을 지지하고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배격하고 중공의 理念的 紛糾는 내내 和解를 볼 수가 없었다.

중공은 후루시초프가 큐바에서 후퇴한 처사를 「큐바의 독립과 국

註12)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 토의

제공산주의의 혁명노선」을 祭物로 바친 또 하나의 「유닛히」¹³⁾
라고 규탄하였으며, 북괴, 알바니아등이 이에 호응하였다.

후무시초프의 조치에 대하여 거개의 東歐共產党 및 일부 西歐共產
党등 전후복구와 경제성장에 상당한 成果를 올립으로서 安定基調에
선 党들은 대체로 이를 환영하였으나前述한 革命的 후진공산당은
그것을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¹⁴⁾ 혹은 미제국주의와의 野合현
상이라고 규정지음으로서 공산권의 내부질서는 분열되고 말았다.

후일 몇몇 후진공산국이 자기 제나름의 「自主路線」을 표방하게
된 것도 큐바사태와 관련되며, 북괴가 소련을 비난하고 충공으로 기
울어 졌다가 다시 자주노선을 선언하게 된 것도 그려한 曲折과
관련된다.

「주정주의의 소련이 兄弟共產党에 대한 信義와 盟邦에 대한 公
約을 배반하고 평화공존의 美名下에 제국주의와 野合한 것」을 후
진공산당들은 重大視하여 소련이 자체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Marx-
Tennin주의의 教理를 무시하고 평화공존을 빙자하여 수사로 서방제
국주의와 타협 혹은 약합할 경우 그를 약소공산당의 存在가 평화
공존을 위한 祭物로 이용당하지 않을까 경계하게 된 것 같다.

특히 국제정치상 기형적존재인 북괴는 스스로의 不安定한 Stat-
us에 상당한 不安과 의구심을 품게되어 저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
하게 된 것 같다.

註13) William E.Griffith, The Sint Soviet ript, 1964.
PP.60 ~ 63.

註14) Ibid, P.61

全軍幹部化, 全民武装化, 全土要塞化等을 骨字로 하고 군사적비상사태의 확립에 狂奔하게 된 것이 62년 10월의 큐바사태 직후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북괴는 中共으로 기울게 되는데 63년 8월 미·영·소 3국의 「부분적 핵실험 정치조약」을 두고 일본과 소련공산당간에 벌어진 燥烈한 논쟁에 대한 북괴의 입장은 상기 함으로서 여러가지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63년 8월 프라우다紙에 게재된 「히로시마의 소리」라고 논문에서 G. 쥬코프가 일본공산당의 부분핵심조약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한 것¹⁵⁾이 火線이 되었다.

일본공산당은 소련이 「日共의 자주적 입장과 국제공산당의 기본 관계와 Marx-Lenin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비난하고 「소련공산당의 구주중심주의를 배격하고 「미국의 힘에 대한 과소평가」를 경고하고 「소련공산당이 세계평화를 미·소간의 평화로 보고 그를 사 이에만 전생이 없으면 여타지역에서 미국이 核威脅과 소규모의 핵 전쟁을 감행하여도 무방하단 말이냐」고 대들고, 「평화공존을 생취하는 힘은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정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全世界의 평화민주세력의 공동투쟁에서 나온다」 「제국주의의

註15) 세계정치資料 1964年10月 상순호, №. 200.
소련공산당중앙위의 서한(64년 4월 18일자)에 대한 일본공산당 중앙위의 反覆(동년 8월 26일자) 참조
筆者註, 日共이 핵실험금지조약을 반대하자 志賀義雄, 鈴木市藏등이 이에 반발함에 日共은 그들을 제명처분하였던바, 深・共이 그들을 지지하여 日・共을 支持한 사건이다.

침략정책을 좌절시키고, 세계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의 관계가 생기는 것과 제국주의가 이미 침략정책을 버리고 평화공존을 받아 드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미·소평화공존하에서 미국이 벤두리 지역에서 戰禍를 일삼고 있다」¹⁶⁾ 고 규탄하였다.

북괴와 日·共의 관계는 59년 2월 평양에서 양자의 콤퓨너케가 발표된 이후로 가까워졌으며, 일본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논생이후로 급속히 접근하여 일종의 共同戰線을 회복하게 된다。¹⁷⁾

북괴의 대소접근은 64년 10월 후루시초프의 실각 이후 부터 인바, 그해 12월에 모스크바에서 65년도 「상품호상남입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고, 65년 2월 하노이를 방문한 코쉬긴 소련수상이 帰路에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공존주의와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로 더욱 긴밀해지고, 그로부터 다량의 군사, 경제원조가 소련으로 부터 제공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월남전쟁의 확대(2월 7일 미국이 北爆을 개시하였다) 한·일기본조약의 조인(6월 22일) 등과 並行되었다.

註16.) 세계정치資料 1964년 10월 상순호 No. 200,
조련공산당중앙위의 서한(64년 4월 18일자)에 대한 일본공산당 중앙위의返書(동년 8월 26일자) 참조

註17.) 조선노동신문 64년 12월 3일보에서 일공제9차당대회의 성과를 축하하고 忘賀鉛木 등 반당분자의 제명전을 친양하였다.
조선노동신문 66년 3월 16일보, 일공대표 미야모토도겐지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연설할 때 수정주의 노선을 통렬히 비판하여 친양을 받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朝鮮과 中共의 중간에서 내외정세의 추세에 따라서 轉軸하면 北冕는 65년 10월 金日成의 所謂 「자주성에 관한 연설」을 계기로 독특한 노선을 표방하고 나선다. 金日成에 指하면 수정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를 배격하고, 통일과 단결을 強화하는 것이 自主性을 增進하는 일이고, 思想의 主体, 政治의 自主, 經濟의 自立, 国防의 自衛를 이룩하는 것이 党의 基本指針이라고 하였다. ¹⁸⁾

이어서 그는 경제건설과 국방력강화를 다시 강조하여 전쟁에 대비하는 政策을 촉구하고 ¹⁹⁾ 「窮極的 目標는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의 革命을 거쳐서 社會主義를 確立하고, 나아가서 共產主義를 実現하는 것」 ²⁰⁾ 이라고 토로 하였으며, 「남조선 革命은 결국 남조선 인민들의 革命力量의 장성과 그들의 競爭的인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闘争을 통해서 더욱더 각성하고 단결될 것이며, 마침내는 不敗의 革命力量으로 자라나게 될 것」 이라고 상담하였다.

金日成의 「自主路線」은 66年 8월의 「자주성을擁護하자」라고 논문에서 더욱 体系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²²⁾ 그속에서 그는 「分派主義, 修正主義, 教祖主義, 事大主義, 民族虛無主義를 排除」하고 思想

註18)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에 제하여 경축대회에서 행한 김일성 보고, 65년 10월 11일

註19) 동상

註20) 동상

註21) 노동신문 66년 1월 12일보

註22) 노동신문 66년 8월 12일보 「자주성을옹호하자」 참조

의 主体性을 강조하면서 「개개의 나라의 革命은 물론 世界革命과의 관련하에 진전된다.」「Marx-Lenin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개개의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創造的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革命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보장하는 기본이 된다.」「자신의 지도이론을 도출해야 한다.」「나라의 구체적 특수성반을 강조하여 Marx-Lenin의 일반적원칙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나라별로 개개의 당의 有益한 經驗과 創意를 자신의 実情에 따라서 受入如何를 결정해야 한다.」고 累說한 다음 北韓에서는 「자신의 기술, 자원, 민족간부, 인민의 힘에 의존하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고」「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게 되었다」고 自讚하고, 「원금전쟁에서 미제를 저지할 것」과 「사회주의 지령의 통일과 국계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호소하였다.

김일성의 자주노선과 관련하여 경제문제에 관한 김일의 보고를 아울려 檢討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동당대표자 회의에서 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라는 보고에서 그는 원래는 67년에 끝날 계획이었던 7개년 계획을 10개년으로 연장하고 중공업체 계를 확립하고 전쟁에 대비하여 후방체계를 확립하고, 전토는 요세화하고, 공업시설의 분산화, 단위지구별, 전력화동을 촉구하는 등 경제문제에 관한 施策을 제시하였다.²³⁾

그에 의하면 製鐵 등 중공업체는 세워졌으나 그것이 인민경제의

23) 조선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한 김일보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당면 과제에 대하여」 1966년 10월 6일

전반과 調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과 再整備가 시급하며 技術 및 選用上의 粗雜과 未熟 등으로 能率의 低調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새 業体의 건설보다 그려한 驛路事項의 극복이 더 큰 생산효과를 發揮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농업발전이 가장 뒤에 올라졌음을 시인함으로써 삽산화, 협동화 노선이 농업생산력 발전의 24) 근본적인 장애가 되었음을 스스로 폭로하였다.

김일의 보고와 더불어 주목을 끄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한 김일성의 「현정세와 우리의 課業에 대한 보고」의 내용인바. 그속에서 김은 「사회주의 중국적 승리와 제국주의의 궁극적 멸망을 팔연적」으로 보보고, 「월남전과 미제에 대한 타협을 배격」하고, 「세계도처에서 미국에 타격을 가하여 그 힘을 분산해야 한다」 「미제가 탈불일 곳에서 그들의 손을 헤매 놓아야 한다」 「반제 공동투성이 국제공산당의 의견상으로 인하여 實現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제공농전선과 반제통일전선이 이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북한에서의 「전생력강화와 경제건설의 並行」을 강조하고, '62년 당중앙위 제4기제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較力增強策을 결정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전생을 원하지 않으나 전생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고 疏言한 다음 「右傾化의 파괴」를 경고하고 「사상개조로써 노동계급을 革命階級화해야 한다」 「Marx-Lenin 주

註 24) 조선노동당 대교자 회의에서 한 김일보고 ■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과업에 관하여 ■ 1966년 10월 6일

의 당의 지도하에 남조선이 해방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전투
적이고 탄력성 있는 Marx-Lenin주의당을 꾸려야 하는데 남조선 草
命의 전도는 요원하다」 「조선의 통일은 인민의 일이고 어떠한
外部의 干涉도 배격한다.」 「공산주의자를 제쳐 놓고 통일을 논의
할 수 없다」는 등의 主張을 署列하였다.

통한에 대한 김일성의 底意는

「후루시쵸프의 평화공존 노선 및 非「스타린」화 정책과 함
께 공산권의 소위 일체성에 금이 간 이래, 북파의 어떤 수
단도 가리지 않는다고 赤化統一 방안이 소련으로부터 전면
적 자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소련의 对美협조를 내용으
로 하는 평화공존 노선이 확고한 것이라고 보고있는 북파는
미·소협조정책에 의해 북파권력이 회생되는 통일이 확정되면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기회만
포착하면 소련이나 혹은 중공의 지지가 없어도 단독으로 행
동을 개시하려는 태도로 해석된다」²⁵⁾ 고 본 북한 연구전문
가의 견해를 인용할 필요도 없이 67년 12월 16일 「최고인
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한 「정강연설」에서도 뚜렷이
들어난 바 있다.

즉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성이 고조되고 革命情勢가 성숙되어
우리의 지원을 요할 때에는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힘을 합하여
조국통일을 성취할 결정적 투쟁에 동원될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註25) 共產圈問題研究所 北韓總鑑, 1945~68 1968 刊, P.730.

튼튼히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 혁명기지의 물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암보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잘하여.... 혁명적 대사업을 주동적으로 맞이 할 수 있는 물질적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²⁶⁾ 이라고 언명함으로써 武力에 의한 적화통일도 불사하는 決意를 表示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은 결국 남조선인민의 혁명역량의 창성과 그들의 결정적인 투생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것」이라고 본 김일성의 견해²⁷⁾로 보아 앞에서 나온 「결정적시기」란 「남조선에서 각계급의 애국적 민주세력을 망라하는 광범한 반미구국통일 전선」 즉 「노동, 청년학생, 지식인등과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는 조직, 참된 계급적 이익을 옹호하는 민주적이고,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조직이 형성됨으로서 「인민정권이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이 成熟한 시기」²⁸⁾ 를 지칭한 듯 하며 「우리의 힘의 판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국내외정세를 신중히 평가하지 않고, 모험주의적 투생을 전개하는 것은 큰 실패를 초래한다」²⁹⁾ 고 경고한 사실을 보아 「결정적시기」의 판정에 있어서는 내외정세의 동향, 특히 한·미관계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정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註26) 共產國問題研究所 北韓總編, 1945 ~ 68 1968 刊, P.730.

註27) 노동신문 1966년 1월 12일 보

註28) 월간조선자료, 1966년 11월 통권 66 중 노동당대표자 회의에서 서 한 김일성보고 참조

註29) 등장

북괴의 경제사정은 자료의 제약과 통계숫자의 신빙성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난하나 내외경제의 변동과 김일성의 노선변화에 따라서 경제정책의 전반이 좌우되고 있음이 分明하다.

최근의 경제사정을 개관하면 65년도에는 재정상 한상두가 실토했듯이 한해 수해로 인한 말전력저하 및 군사력강화때문에 건설에 떨어졌다 생겨서 공업생산이 전년에 비하여 14%밖에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해의 중공업투자는 공업건설투자의 87.3%에 달하였다. 한다. 66년도에는 총 예산 3,752,760,000 원에서 군사비 지출이 前年에 비하여 40%가 늘어났기 때문에 경제발전에의 투입이 전예산의 68.1%에 그치고 공업성장률은 9%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67년도에는 총예산 3,964,440,000 원의 30.2% (1,196,590,000 원)가 군사비로 지출되었으며, 기계공업투자가 比前年 1.8 배, 금속공업투자가 비전년 3 배로 늘어났으니 군사력증강에 얼마나 힘을 기울였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29.)}

6·25 휴전의 53년부터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가 확립되었다는 58년경까지의 북괴의 내부사정과 대외관계는 상당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6·25 동난과 휴전성립이 북괴의 독재체제를 공고화하는데 상당한 푸라스가 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백万의 월남피난민, 동난전후의 소위 反動죽정, 전쟁의 災禍등으

註29)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7차 회의에서 한 내각부수상 리종옥, 재정상 한상두의 보고 참조

68년의 세출예산은 5,234,400,000 원인데, 그중 군사비는 32.05%에 해당하는 1,677,700,000 원에 달하였다.

한국 1961년 1월 19일

한국에 대한 국제법상의 권리와 책임은 31) 국제법상의 권리와 책임이다. 「한국의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62년 10월 10일 개정된 제2차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64년 10월 10일 개정된 제3차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10월 10일 개정된 제2차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한국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은 국제법상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법이다.

같이 60년대를 거치 一貫하여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 분야의 強化와 軍事体制의 強化에 狂奔하고 있는 것이 内外정세의 변동에 对備한것 입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어느面에서 보면 스스로가 내포하는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하면 一種의 被害妄想의 所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勝利의 궁극目標를 한국의 赤化統一에 두고, 경우에 따라서는 武力統一도 不辭한다고 호언하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기능을 方向으로 볼고 나가면서도 김일성이 「反敵의 力關係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모험주의적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큰 실패를 초래 한다」³²⁾ 고 경고한 것은 그가 환상의 세계에서 살면서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음을 自認한 Case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남조선 해방을 혁명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남조선 해방을 위하여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배제하고 북반부의 사회주의세력과 힘을 합쳐서 국통일을 할 수 있는 혁명적세력을 남조선에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당의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고, 노동대중을 결집하고,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는 조직 — 그것은 참된 계급적이익을 대표하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조직이 되어야 한다. —을 이룩하여 남조선에서 광범한 반미 구국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것」 즉 「각계층을 관리한 人民政權을 수립하는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해서 「外勢를 배제하고, 통일혁명

註32) 월간조조선자료, 1966년 11월 통권 66호 노동당대표자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당의 임무— 참조

이 완수되면 통일후의 사회제도는 조선인민의 총의로서 결정하되
남조선인민이 원하면 공산체가 될 수 있다」³³⁾ 는 것이다.

남한에서 그러한 「구국통일전선」이나 「인민정권」 따위가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김일성이가 판단할 때가 아마 그가 말한 「통일을 위한 결정적시기」일 것이다. 그러한 시기를 포착하여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培養하는 준비기간이 현시기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통일방안에 관한 한 김일성의 의도는 6·25 때와 다를 것이 없으나 「통일의 결정적시기」에 호응하여 일제히 봉기할 수 있는 社会主義의 조직적기반이 남한에 存在하지 않고, 6·25 때 政略上 南勞党을 축성해 버린것이 김의 통한전략에 至大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던 「결정적시기」가 왔다고 김일성이가 확신하게만 되면 혁명전생 -통일전생-의 포문은 열릴 것이다. 6·25의 再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북괴의 「挑撥과 浸透」는 「결정적시기」를 촉진하는 주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은 김일성에게는 「민족해방」인 동시에 「계급혁명」이며 그것을 暴力으로 달성하려고 할 때 「해방전쟁」 혹은 「정치전쟁」의 형태로 구현될 것이다. 그러므로 김의 「혁명통일」의 전략에 對備하는 최대의 과제는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의 모든面에서一切의 취약성을 배제함으로써 그에게 통일의 「결정적시기」를 허용하지 않는데 있을 것이다.

註33) 월간 조선자료, 1966년 11월 통권 66호 노동당대표자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 -현정세와 우리당의 임무- 참조

南北統一에 대한 김일성의 意図는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韓國政府樹立이후 北傀가 내세운 統韓方案의 主要內容과 그것이 提起된 經緯를 經過順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1948년 9월 10일 「最高人民會議」에서 발표한 정강에서 김일성이 「민족통일의 必須的 先行条件이 되는 外軍撤收」를 強調하고, 「外來侵略勢力으로부터 国土를 방위하고, 北朝鮮에서 이미 戰取한 民主革命成果를 방위하기 위하여 共和国政府는 人民의 軍隊를 모든 方面에서 強化한다」³⁴⁾고 언명하여 武力에 赤化統一의 底意를 이미 暗示한 바 있다.

2) 1949년 6월 28일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의 結成大会에서 採擇된 方案」에 의하면 「統一事業은 조선인 자신이 할 것」과 「美軍과 UN韓委의 撤收」에 이어 「南北의 現政府에 대하여 선거의 準備와 實施에 必要한 指示」를 할 「選舉委員會」의 구성을 제의 한바 있다.

3) 1950년 6월 7일 「祖國統一 民主主義戰線 拡大 中央委員會에서 採擇된 平和統一呼訴文」에서는 「統一的 最高立法機關을 設立하기 為하여 8月 5日부터 8日사이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과 「선출된 最高立法機關의 會議를 8月 15日에 서울서 소집할 것」과 「南北朝鮮의 全政党社会團體 代表가 협의회를 38度線 연선의 海州市 또는 개성시의 어느 한 都市에서 6月 15日부터 17日에 걸쳐

註 34) 大韓民國 外務部 外交研究院 統一問題研
第一輯 1966年10月, p.281 ff

소집할 것」을 제의하였다.

4) 54년 4월 27일 「제네바회談」에서의 統韓에 관한 제언에서 南은 「자유선거를 準備하고, 南北朝鮮의 經濟 및 文化的 接近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南北朝鮮의 代表에 의하여 全朝鮮委員會를 조직하고 該當위원회는 선거법 초안을 준비」하며 「南北朝鮮의 경제문화 및 通行, 書信의 自由交流를 실시할, 대책을 즉시 강구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어서 6月 15日의 修正案에서는 「北朝鮮과 南朝鮮」은 1年以内에 各々兵力을 10萬 以下로 감군」하고, 「전쟁상태의 점차적 해소와, 雙方協力의 平和的態勢에 의 전환문제를 論議하고, 또 適合한 協定을 체결토록 제의하기 위한 남북조선대표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南北韓과 「他國家間에 체결된 조약은 군사적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한, 그것은 朝鮮의 平和的 統一과両立되지 않음을 인정할 것」中立化案 같은 것을 들고 나왔으며, 그後 제8차 최고인민會議에서는 심지어 南韓에 대한 「電力供給」까지 제의한 바 있다.

5) 56年 4월 28일 「조선노동당 제3차 당대회에서 採擇된 平和統一을 위한 선언」에서는 「平和的 統一을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서는 停戰의 成果를 確固한 平和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조선문제의 平和的解olution을 위한 국제적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해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차 회의에서 採擇된 대한민국 민의원과 전체 한국 社會人士에게 보내는 서한」에서는 「남북조선의 軍備縮少會議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6) 59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에서의 남일의 연설」에서는 「南北朝鮮當局은 相對方에 反對하여 武力を 사

사용치 않을 것을 相互 선언할 것을 제의하였다.

7) 60년 8월 14일 「8.15 경축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에서는 「過渡的措置로서 남북조선의 「聯邦制를 제의한다」。 「萬一 上記제안들을 남조선 정부당국이 동의치 않는다면 南北조선 實業界代表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자」 「以上의 제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대표들이 平壤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합의할 것」 등을 제의하였다.

8) 61년 9월 11일 「제4차 노동당대회 선언 "조국의 平和的統一을 위하여"」에 나타난 통일方案에서는 「총선거에 앞서 반드시 남북조선의 모든 정당·사회단체들과 개별적人士들이 전 조선 어느 地域에서나 정치활동을 진행할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65년 2월 15일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連席會議에서 採擇된 南韓人에게 보내는 呼訴에서 는 韓日會談이 타결되면 南조선 人民은 美·日 제국주의자의 二重의 奴隸로 전락한다」 「南北의 經濟·文化의 交流와 合作을 実現시키기 위하여 反美 救國鬪爭을 전개하자」고 나왔으며, 그해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아리·아루함」社会科学院에서의 연설에서 김일성은 「조국의 통일과, 조선革命의 全国的 勝利는 1. 北朝鮮에서의 社会主義 건설의 強化, 2. 南朝鮮 人民의 結束에 의한 革命勢力의 強化 3. 조선인민과 國際革命勢力과의 团結強化에 달렸다」고 언명하였다.

이상을 綿密히 考察하면 北傀의 統韓에 관한 제의는 자기 제기

된 時期別로 特정의 政略的 意圖를 내포하고 있음을 看破할 수 있다.

즉 1)의 경우는 大韓民国 樹立에 対한 反撓이었으며, 2)는 南韓에서 美軍이 철수한 時点 (49년 6월 29일 철수完了)을 노린 民心搆乱에 目적이 있었던 것 같고, 3)은 6.25南侵을 目前에 둔 가장 惡辣한 偽裝平和攻勢였음이 分明하다.

4)의 경우는 韓國動亂의 休戰直後라는 저들에게 가장 不利한 狀況下에서 스스로의 弱勢를 읊폐하기 위한 術策이었으며, 소련과 中共의 支援을 背景으로 한 國際會議에서 韓國과 対等한 地位를爭取하기 위한 정치적 제수추어 었을 것이다. 특히 「電力供給」의 제의는 動亂中 北韓의 發電施設이 거의 파괴됐던 사실을 상기할 때 당시로서는 전혀 實現性없고 虛勢부림에 不過하였다.

5)의 경우는 소련共產黨 제 20차大会에서 平和共存論이 나온直後이며, 北傀로서는 戰後復旧를 위하여 소련에 크게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時期였음으로 対蘇追從이 不可避하여 그러한 제의가 나왔을 것이다.

7)은 한국에서 4.19가 밖발하여 旧政權이 崩壞된 混亂期였으므로 対民 心理效果를 노려서 「南北聯邦制」니 「實業界代表」니 板門店 會議」니 하는 文句를 내놓았을 것이다.

8)의 경우는 한국의 5.16 직후라는 時point에서 「政治活動의 自由」를 対民 캐취·부레이즈로 내세웠던 것 같고,

9)는 65년이후로 北傀의 統一에 対한 基本개념이 革命統一로 落着되었음을 端的으로 表明한 것이다. 그로 부터 南北統一은

『革命의 完結』을 意味하게 되며, 따라서 赤化統一이 아닐 수 없으며, 그 方便으로 武力行使도 不辭하게 된 것이다.

(4)

美・蘇間 核武器競争에 基因한 「平和共存」은 國際政治의 多元化를 초래하였고, 美・蘇 两国은 각기 死活의 国家利益으로서 全面核戰爭의 防止, 즉 自体生存의 유지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國際政治의 「변두리 문제」가 蔚外 내지는 等閑視되는 경향이 統出하게 되었고, 变두리 地域의 特定政權 - 例천대 北傀 - 은 그러한 추세에 便乘하여 자율적 行動半徑과 影響力의 拡大에 힘을 쓰게 되었다.

그런데 越南戰爭에서 苦杯를 마신 美軍은 対外介入과 責務를 緒少하기 위하여 國際政治의 廣範한 지역에서 "disengagement"의 方向으로 政策轉換을 서두르고 있다.

그리하여 韓半島 情勢는 어느面에서 볼 때 美國勢力의 「死角地帶」로 化하고 있는 듯 한 인상을 줄 정도에 이르렀으며, 北傀은 그틈을 타서 韓國으로부터 美國勢力を 몰아 내고 社會主義 革命方式에 의한 赤化統一을 달성하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軍事力增強에 狂奔中이다.

北傀의 革命路線을 獨特한 教條主義的 妄想과 一切의 異質的要素의 介在를 許容하지 않는 社會構造, 철저한 獨裁体制 民生問題과 經濟法則을 無視한 軍事工業 為主의 經濟構造에 立脚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한가지 目標를 向하여 集中시킬 수 있는 強制力を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여러가지의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어서 革命統一을 狂信的教理로 표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北傀는 對外的으로 상당한 適應性을 示現한 바 있으며, 저들이 제기한 統韓方案도 그때 그때의 與件과 狀況에 對한 故密分析에서 나왔으며 高度로 政略的인 것이었다.

北傀의 革命統一, 赤化統一에 대하여 韓國으로서는 平和統一, 自由統一로 맞설 수 밖에 없으며, 현재로서는 自立經濟의 確立에 의한 國力充實과 民主主義의 確立등 도든面에서 道德的 優位를 確保함으로써 「南北韓의 落差」를 極大化하는 것이 統韓의 当面한 課題일 것이다.

예상되는 北傀의 挑発에 대한 最善의 戰略은 모든 挑発을 最善의 費用으로 철저히 물리치는데 있을 것이다. 끈질긴 도발이 즉각 토벌되고 한국의 경제성장과 政治的安定에 아무런 打擊도 줄 수 없다는 것이 確実해 지면挑発자체가 無意味해질 뿐더러 極端的 軍事体制를 유지하는 名分도 퇴색될 것이므로 어느 時機에는 金日成이 平和攻勢로 나올지도 모르며 그때는 國力의 充實과 道德的 優越에 의한 南北韓의 落差를 最대로 活用하여 統韓戰線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도 있을 것이다.

統韓問題가 구체적으로 論議되기 위한 大前提是 6.25 南侵의 責任糾明일 것이다, 이것은 장차 韓國政府가 對北關係에서 道德的 優越을 견지하기 위하여 活用할 수 있는 好借의 名分인 것이다. 統一의 자름길은 直接코스가 아니라迂迴接近에 있음을 強調한다.

註 35) 이 問題와 관련하여 南北韓間에 一切의 "Communication"이
斷記된 現狀이 金日成의 極端的 軍事体制의 維持 및 敵對
路線의 強行에 있어서 오히려 有利한 条件이 되고 있지
않는지 심증히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모든 mass
media를 共產黨이 獨占하고 있는 北韓에서 大衆은 外務事
情에 關한 정확한 정보를入手할 길이 없으며, 결국은 共
產黨의 偏向선전과 歪曲捏造된 보도에 感化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金日成의 革命統一, 赤化統一의 野望을 粉碎하기
위하여 以上의 鐵의 張幕을 관철할 수 있는 "Communi-
cation"의 方案을 강구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